

## 주제발표 2

### 국가정보화 방향과 정보정책의 허실

김 영 삼

동의대학교 행정과 교수

#### < 목 차 >

1. 문제의 제기
2. 정보 정책 논의
3. 한국의 정보화 방향과 정보정책 구조
4. 한국 정보정책의 허와 실
5. 결론

##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우리의 지식 및 경험과 결합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라는 산업사회의 인간 활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고도화된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던 법과 제도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구시대적 규제라는 이름 하에서 사라질 것을 요구하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에서 변하지 않은 영역이 거의 없다. 특히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경쟁의 원리와 새로운 사회질서 형성을 위한 새로운 규제의 요구가 상호작용하면서 점차적으로 정보사회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정보화 현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정보정책이란 기존의 사회를 21세기형 사회로 변화시켜 나가며, 변화된 사회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정보정책이란 용어의 의미가 성숙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렵지만 정보기술의 사회적 확산과 이용에 따른 효과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국가 및 사회에 제도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 그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정보정책의 범위 역시 정부역할의 변화와 역할의 대상, 능동적으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부문의 증대, 정보기술의 발전과 광범위한 사회적 확산,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의 동시적 연계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윤곽을 대충이나마 파악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정책의 범위문제는 상황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겠지만 정보정책이 갖는 사회적 효과가 이전의 산업정책에 비해서 훨씬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루어 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세계의 정보화 흐름과 여전히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정책이 불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보정책의 허와 실을 살펴보고 21세기 정보화의 방향을 적실성있게 만드는 것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여겨진다.

## 2. 정보정책 논의

### 1) 정보정책 연구의 어려움

J.A.A.Sillance는 유럽공동체의 정보정책이 통합된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는 이유를 다각적으로 상세히 검토한 후 (1) 새로운 정보정의의 필요성, (2) 정보산업의 전

##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우리의 지식 및 경험과 결합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라는 산업사회의 인간 활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고도화된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던 법과 제도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구시대적 규제라는 이름 하에서 사라질 것을 요구하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에서 변하지 않은 영역이 거의 없다. 특히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경쟁의 원리와 새로운 사회질서 형성을 위한 새로운 규제의 요구가 상호작용하면서 점차적으로 정보사회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정보화 현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정보정책이란 기존의 사회를 21세기형 사회로 변화시켜 나가며, 변화된 사회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정보정책이란 용어의 의미가 성숙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렵지만 정보기술의 사회적 확산과 이용에 따른 효과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국가 및 사회에 제도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 그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정보정책의 범위 역시 정부역할의 변화와 역할의 대상, 능동적으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부문의 증대, 정보기술의 발전과 광범위한 사회적 확산,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의 동시적 연계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윤곽을 대충이나마 파악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정책의 범위문제는 상황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겠지만 정보정책이 갖는 사회적 효과가 이전의 산업정책에 비해서 훨씬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루어 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세계의 정보화 흐름과 여전히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정책이 불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보정책의 허와 실을 살펴보고 21세기 정보화의 방향을 적실성있게 만드는 것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여겨진다.

## 2. 정보정책 논의

### 1) 정보정책 연구의 어려움

J.A.A.Sillance는 유럽공동체의 정보정책이 통합된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는 이유를 다각적으로 상세히 검토한 후 (1) 새로운 정보정의의 필요성, (2) 정보산업의 전

략적 측면, (3) 정보 및 기술변동의 결과, (4) 정보정책의 불확실성의 근원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정보정책이 분편화되는 이유를 정보이론의 결여, 정보의 다차원적인 특성, 관료적 할거주의, 다양한 정책 패러다임으로 결론짓고 있다.

특히 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책결정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끌고 있다. 더구나 불확실성을 더해 주는 것은 정치적 해결양상이 늘 바뀌며, 정책갈등과 모호성이 불가피하며 어떤 통합된 정책이 결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보정책이라는 이름 하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매우 많기 때문에 단일의 국가 정보정책 내에서 이들을 모두 포괄하기는 명백하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신해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인식을 불러 일으키는 과정이다. 정책결정자 및 여타 관련자들은 문제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정책대응들은 문제들의 배경에 대한 이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융통성이 필요하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제들간의 상호 연계의 인식 바탕 위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정보정책 분석의 전제

본 논문에서는 정보 정책을 인터넷의 특성(개방성, 상호운용성, 상호접속가능성)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원적인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즉 기존의 전화망, 무선전화망, 텔레비전, CATV의 점차적인 상호접속 및 개방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정보통신 하부기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각종 부문들의 관계를 규제, 조정, 촉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sup>1)</sup>

1) 정보정책 및 정보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한 국가별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ustralia: Government Policy &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 Australia: The Networked Nation
- Canada: Information Highway Advisory Council
- Denmark: Denmark: The Information Society over 200 KB
- Denmark: and From Vision to Action - Info-Society 2000
- Estonia: Estonian Data Networking - White Paper
- Europe: The Information Society Project Office
- Europe: G7 Information Society Pilot Projects
- Europe: Europe's Way to the Information Society
- Europe: Europe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 Bangemann report
- Japan: Japan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 Japan: Intellectually Creative Society of the 21st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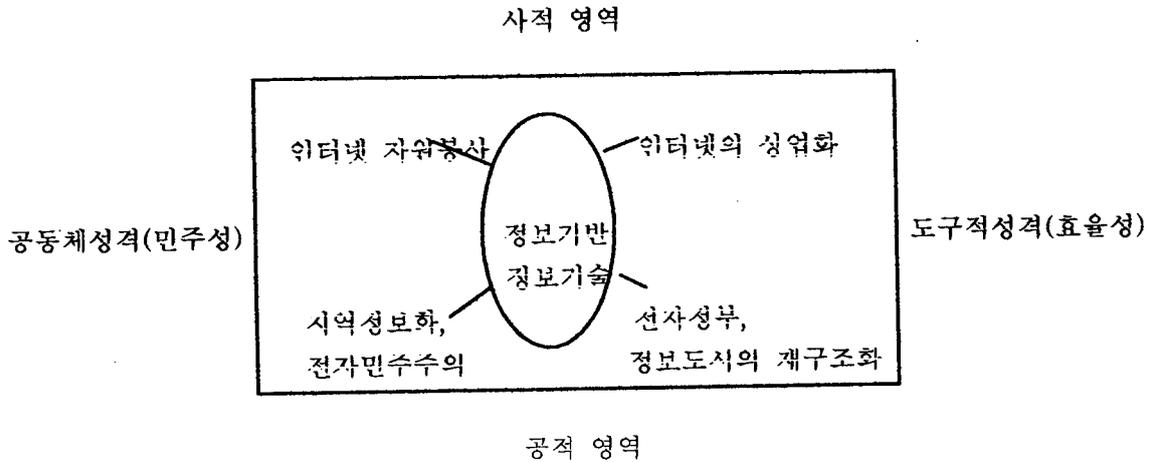
따라서 정보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통신 하부기반의 특성과 하부기반이 작용하는 영역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하겠다. 정보통신 하부기반은 개인, 조직 및 사회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보통신의 속성에 의해 개인, 조직, 사회는 산업화에 의해 파괴된 공동체적인 특성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우리는 효율성과 공동체성이라는 양극단적인 면을 정보통신기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 하부기반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상호 교차시켜 보면(그림 2-1 참조) 오늘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보사회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하위 정보정책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할려고 하는가?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정보의 내용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보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현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보(내용 자체와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통신, 오락 및 교육의 결합으로 정보정책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게 전개되지 않을 수 없다.

- 
- Netherlands: Dutch Information Superhighways Programme (in Dutch)
  - Singapore: IT2000
  - Spain: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Function of Communications
  - USA: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 USA: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Virtual Library
  - USA: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Testbed
  - United Kingdom: Structuring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in the UK
  - United Kingdom: Structuring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 United Kingdom: The G7 Global Inventory Project
- (자료 출처: <http://www-1.openmarket.com/personal/grant/highway.html> )
- Australia: Apply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 Long-Term Strategies
    - for Science and Technology: The Case of Australia
  - Canada: Building the Information Society: Moving Canada into the 21st Century
  - Finland: Finland's Way to the Information Society
  - India: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itiatives in India
  - Korea: The Korea Basic Plan on Informatisation Promotion
  - Mexico: IT Policy in Mexico
  - Taiwan: From Vision toward Reality: NII Movement in ROC
  - Thailand: IT2000: Thailand National IT Policy
- (자료 출처: <http://www.ncb.gov.sg/nii/back2.html#country> )

(그림 2-1) 정보정책의 대상과 주요 내용



현재 전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을 추출해보면 전자민주주의, 전자정부, 공동체 네트워크(지역정보화), 인터넷의 상업화, 저작권 보호, 인터넷 검열, 전자상거래, 전자화폐, WWW의 활용, 다양한 정보통신 부문의 결합 및 융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위의 그림에 들어있는 항목들이 항구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경계를 정하기가 어려운 부문들이 점차 확대될 것이며, 서로의 영역을 상당 부문을 교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3. 한국정보화의 내용과 정보정책 추진 조직 구조

#### 1) 한국정보화와 정보정책의 내용

1995년 8월 4일에 제정된 『정보화 촉진기본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보화란 “자연인 혹은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식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인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보통신기반이란 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등을 말한다 라고 정의함으로써 정보통신기반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2)</sup> 그렇지만

이 법은 공공·지역·산업·생활 등 각 분야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가정보정책의 기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2) 정보정책 추진조직구조

(1)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2) 정보화 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하여 25인으로 구성한다.

(3) 정보화 추진 실무위원회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35인으로 구성한다.

(4)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4개 이상의 분야별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은 소관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5) 위원회, 정보화 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각각 정보화추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시행계획은 내무부장관이 종합하여 제출한다.

(7) 중앙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시행령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규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정보통신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를 보면 ①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② 선도시험망 사업, ③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 ④ 시범지역사업, ⑤ 원격진료 등 원격시범사업, ⑥ 핵심기술개발사업, ⑦ 대국민 홍보사업, ⑧ 법,제도연구사업, ⑨ 국제협력사업, ⑩ 경쟁력기반 기술개발사업, ⑪ 응용기술개발사업, ⑫ 기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과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과위원회에서의 업무를 망라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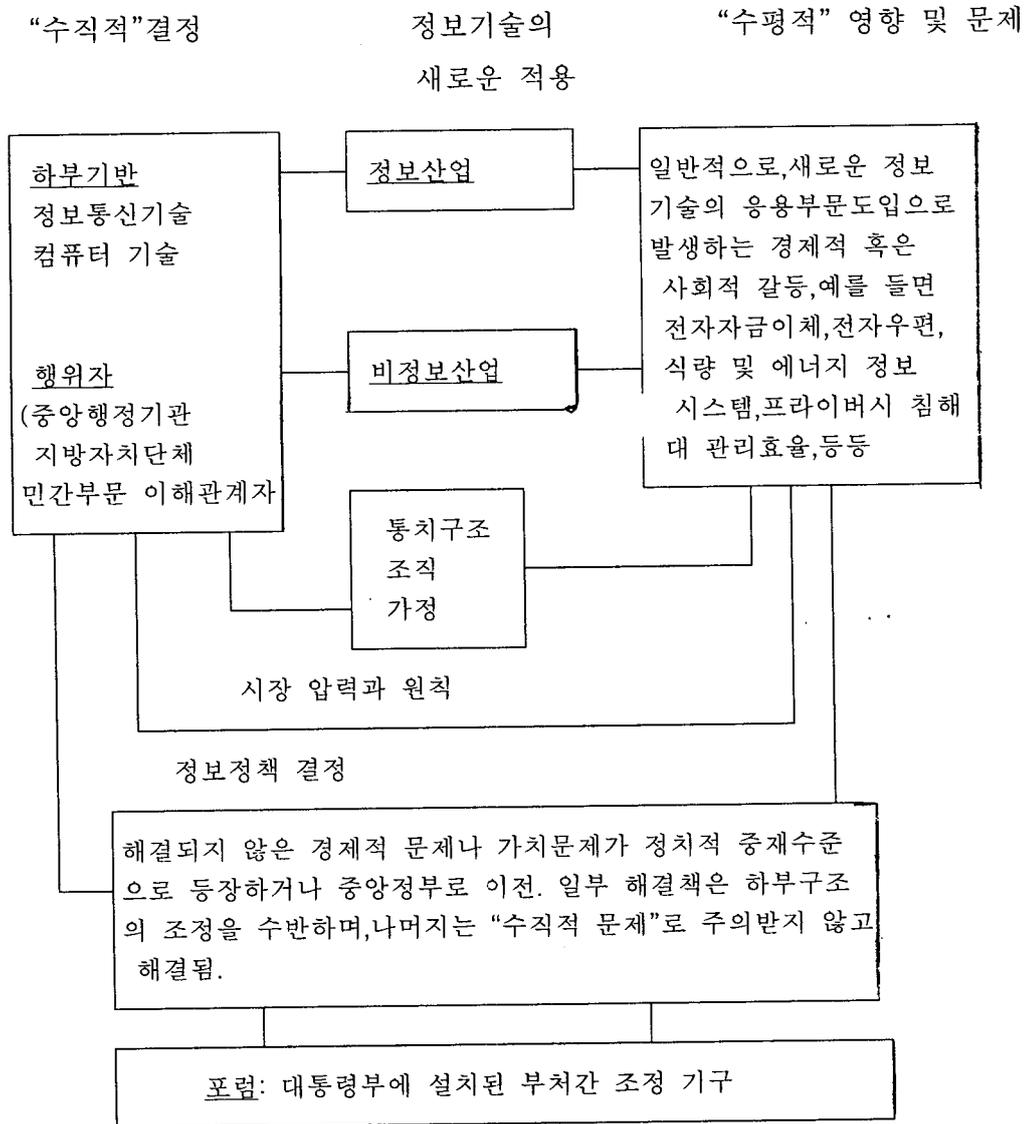
---

2) 미국의 경우, 정보기반의 성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네트워크조직의 관점에서 국가정보기반은 단일의 통합된 초고속도로라기 보다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집합체이다. 즉 국가정보기반은 하나의 큰 초고속도로라기 보다는 지방, 지역의 정보기반과 비교적 긴 네트워크들의 아주 이질적인 집합체인 것이다. 여기에는 (1) 광범위한 그러면서 계속발전하고 있는 주변기기술, (2) 정보 자체, (3) 응용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4) 네트워크 표준과 전송코드, (5) 주로 민간부문의 인력들이 포함되어 있다(William J. Drake, 1995: 4-8).

보통신부가 관장, 간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정책 추진조직체계가 한국의 행정운용에 적합한 것인가이다. 한국은 할거주의가 상당히 뿌리깊은 조직이며, 게다가 산하 많은 협회와 연구기관들을 두고 독자적인 정보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기관들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 내용들의 협의, 조정은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추진실무위원회, 추진분과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계획에 대해서 크게 수정을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구나 공동연구 및 공동활용방안은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상호 중복, 서로 다른 결론 도출 등으로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 3-1) 정보정책의 분석틀(Porat의 내용을 조금 수정)



## 1) 정보화에 대한 정부 및 사회의 경험부족

미국과 유럽의 정보화 진전은 상당한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게다가 정보화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함의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sup>4)</sup>. 한국의 경우 정보화를 향한 다양한, 그리고 분산된, 시행착오적인 그러면서도 상호연계시켜 종합적인 윤곽을 그려보려는 움직임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끊임없는 외부의 충격에 대응하다 보니 정보정책의 우선순위가 실사이 없이 변경되어 체계적인 경험을 쌓을 수가 없었고 그나마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시도하다가 그만두고 시도하다가 그만두는 형태로 정보화는 파행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989년 영국 정보통신산업 연합회(CICI)에서 영국정부나 유럽공동체가 행동 취해 줄 것을 고려한 정보산업과 관련된 12개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대동소이하다(CICI(1989), Towards national information policies: the British information industries).

① 정보산업규제, ②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③ 정보상품 및 정보기술에 근거한 거래, ④ 정보통신 및 통신기반, ⑤ 전세계적·국가적 시장개발, ⑥ 국제거래, ⑦ 단일유럽시장, ⑧ 정부조달 및 정보서비스공급, ⑨ 연구개발, ⑩ 교육 및 훈련, (11) 표준화, (12) 조세 및 여타 만연되어 있는 정책들

1951년 세계 최초로 컴퓨터화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출발하여 1990년까지 영국의 정보정책을 입법과 규제, 도서관과 정보서비스, 공공/민간부문 관계, 전자정보, 데이터보호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연대기적으로 검토한 Taylor Graham은 정보정책이란 보다 나은 정보기반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한 정책들의 창조물이라고 정의하면서 단일의 통합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국가정보정책이란 것을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실현가능한 일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Taylor Graham, 1991).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정보정책 경험도 없이 정보통신부에 의한 주도적인 그리고 개별 분권화된 영역에서는 개별부처들이 독자적으로 정보정책을 입안, 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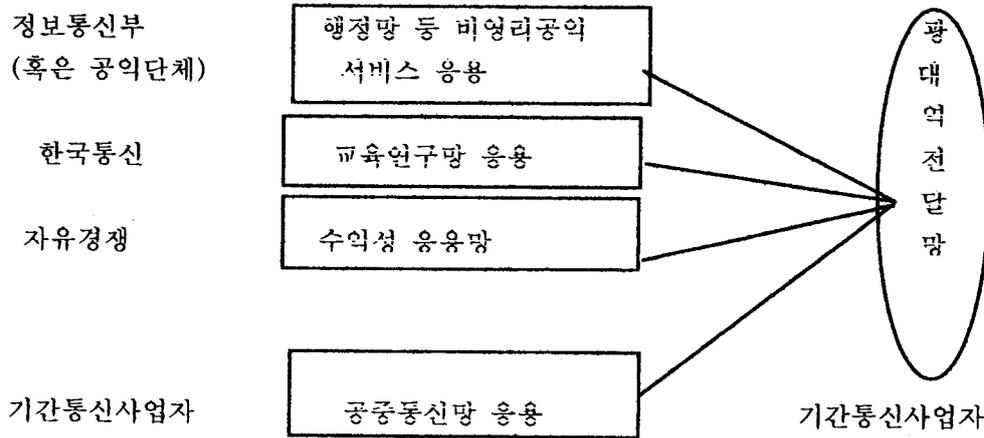
## 2) 초고속정보망의 성격에 대한 경직성

한국 초고속통신망 구축의 주관회사인 한국통신의 정보전송망사업과 정보서비스망 사업의 구분의 핵심적 논의는 각개 서비스망을 하나의 통일된 기간망을 이용하

---

4) 미국의 과학재단은 인터넷 발전과 아울러 "과학과 기술에 관한 윤리와 가치"(1985-1987)에 대한 NSF프로젝트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가 Carol C. Gould(ed.)에 의해 The Information Web: Ethic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Computer Networking(1989)라는 책으로 발행

여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물리적 기간망 위에 다수의 논리서비스 망 구축한다는 것이다.



자료:체신부 통신진흥협회 초고속통신망연구분과회,정보통신산업육성 및 기술진흥에 관한 연구(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수립)(1994.1), p.98

이러한 초기의 국가정보서비스망과 공중정보서비스망의 구분추진 개념은 한국통신만이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발상으로 모든 망들이 서로 개방되고, 접속가능하며, 상호운용이 가능하다는 네트워크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망(연구망,교육망,행정망,금융망 등)의 상호접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 통신의 망사업이 곧 초고속통신망 사업이라는 1996년 정기국회의 감사 지적은 옳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1997년 10월 15일 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의에서 특히 의의 있는 것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정에 기존의 통신설비의 활용 여부를 두고 정통부,통신부등 관계부처간의 입장을 조정한 것이다. 이러한 중앙부처간의 조정, 합의는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기존 전송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투자를 없애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법과 제도가 다른 방송,통신 및 전화 시스템의 상호융합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물론 한국이나 일본,프랑스의 경우 미국과 달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패러다임이 어떤 것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미니텔의 성공은 한때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정보화 투자에 이정표가 됐다.

그러나 미니텔의 모습을 보인지 약15년 만인 지난 8월 26일, 프랑스의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미니텔이 프랑스 사회의 정보화를 가로막는 주범이라며 지난 15년간 쌓아온 「미니텔 신화」에 정부 스스로가 종지부를 찍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조스팽 총리는 『미니텔은 오로지 국내용인데다가 기술적 한계 때문에 새롭고 유망한 정보기술의 적용·발전에 장애가 된다』면서 인터넷 시대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전자신문,1997.9.1, 3면).

프랑스의 경우 미국의 정보산업의 침투에 대항하기 위해 1978년에 사회의 정보화라는 보고서에 바탕을 둔 정보정책을 입안, 시행하기 시작하였다(시몽 노라/알랭 멩크,이민웅·안동근 공역,1988).

정부의 공무원들은 정보통신기술전문가는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이나 한,두회사의 정보통신기술 개발관련자들만으로 복잡하고 결합되어가고 응용되어가는 정보통신부문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분야의 대가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단일의 일관된 기술적인 틀로서 묶어버리는 것보다는 초고속정보기반이라는 것은 여러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의존하는 아주 중요한 일련의 자원들의 상호 접속성, 접근가능성, 기능성에 중점을 두는 하나의 개념(NII 2000 Steering Committee, 1996 : 4-5)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초고속정보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망 설비이든 내용이든간에 복잡하고 동태적인 시스템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사부문의 정보서비스의 집합체이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도 항상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실제로 초고속통신망의 구축원리와 실제 기술개발에 관해서는 한국통신이 담당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의 논리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관련 아키텍처나 플랫폼, 기술발전 시나리오 등이 여러 통신기관이나 연구소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1) 산업간에 걸친 기술의 이해, 개발 및 응용을 촉진시키며, (2) 초고속정보망의 비전을 실제 집행가능하게 전환시키거나 (3) 공,사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의 대표간 대화를 촉진시키는 미국의 Cross-Industry Working Team<sup>5)</sup>과 같은 조

5) Cross-Industry Working Team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3Com Corporation, Alcatel Telecom, American Management Systems, AT&T, Apple Computer, Inc., Bell Atlantic Network Services, Inc., Bellcore, BellSouth, Cisco Systems, Inc., Citicorp, Compaq Computer Corporation, Corning, Inc., CyberCash,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EarthLink Network, Inc., Ericsson,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Fujitsu, GTE Laboratories, Inc., Hewlett-Packard Company, Houston Associates, Inc, Hughes Network Systems, Inc, IBM Corporation, Intel Corporation, InterTrust Technologies Corporation, Lucent Technologies, Inc., MCI Communications Corporation, Motorola, Inc., 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s and Technology, NEC USA, Inc., New York Times,

적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며, 또한 각 회사나 기관의 초고속정보통신망에 관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확보할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개방성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개방성과 상호접속성, 상호운용성 보다는 국가기밀의 보호라는 폐쇄성에 바탕을 정보화 정책은 정보시스템 보안기술의 적극적 개발보다는 행정망과 민간인터넷망의 이원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정책은 사회의 인터넷 수용속도에 발맞추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다.

1996년 2월 인터넷 검열조항(Communications Decency Act:CDA)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통신개혁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1996년 12월 제3차 순회재판을 위한 항소법원에서 CDA를 위헌으로 판결했었다. 특히 우리는 판결문의 내용을 중시해야 하는데, 수석판사 Solvitier는 “인터넷은 지금까지 이 나라가 보아온 가장 참여적인 대중 언론시장(the most participatory marketplace for mass speech)을 형성했으며, 계속 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원고들은 인터넷 통신의 민주적인 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할 것이다: 제한된 수단을 지닌 개별 시민들은 그들의 관심사항을 전 세계의 청중들에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Dalzell의 다음과 같은 결론적 주장은 정부의 인터넷 관점을 다시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정부가 부과한, 내용에 근거를 둔 규제로부터 가장 광범위하게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비로운 목적에 의할지라도 내용을 근거로 한 어떠한 인터넷 규제도 결국은 돼지를 굶기위해 지구촌을 태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Jon Katz,53-55).

### 3) 국가정보화의 정치적 슬로건화

일반적으로 정보의 가장 심각한 왜곡은 강력하고 호소력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문화적 상징 혹은 신화에 의해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다(Donald T. Wells, Chirs R. Hamilton, 1997:45). 우리의 경우 정보화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각<sup>6)</sup>

---

Nortel, Novell, Inc., Philips Research Briarcliff, Prodigy Services,  
QuantumLink Corporation, RealNetworks, Inc., Silicon Graphics, Inc., West Group  
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oration, Sprint Communications Company,  
Southwestern Bell Technology Resources, Inc., Sun Microsystems, Inc.,  
Texas Instruments Incorporated, USWest Technologies

자료: <http://www.xiwt.org/XIWT/AboutXIWT/membership/members.html>

6) Jon Katz는 정보화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각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① 디지털 공동체가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술을 배분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 ② 이 기술을 습득하기를 원하는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있다.

의 학자나 연구자들과 행정관료들의 이해관계가 정보사회를 향한 시대적 상황과 절묘하게 조화된 작품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우리의 경우 정보화에 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은 존재하나 힘의 균형에 있서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수에 속하는 자들의 주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보정책의 공론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신용박사(문신용, 1997: 16-22)는 정부주도적이고, 기술선도적인 정보화추진 방향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1)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이는 기본계획의 선언적 측면의 내용이 많아 민-간의 역할분담, 자원조달방식, 추진체계, 사업수행의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고려가 미흡하며,

(2) 국가경쟁력을 중시하고 삶의 질을 경시하는 경향이 많아 정보화 촉진에 따른 부작용의 대처가 부족하고,

(3)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1996-2000까지 3단계로 구성-기술발전속도에 비해 기간이 너무 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현재 중앙부처들이 행하고 있는 정보화사업들은 국가사회를 정보화시키는 프로젝트들이라기 보다는 전자정부의 한 형태인 행정업무나 과정의 정보화를 위한 것들이다. 이것은 중앙부처의 정보화수준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인트라넷의 도입을 추진해야 할 시기임을 말해주는데, 인트라넷 구축을 통한 행정내부자료의 전자화, 결재의 비효율성의 제거, 행정업무과정의 재구조화 기반 구축 등 행정내부의 정보화가 이제는 추진 중인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인트라넷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기타 공공기관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이다. 물론 공기업들은 조금 더 향상된 수준이다.

행정내부시스템의 정보화와 행정기관간의 정보화를 인트라넷으로 연결시키는 정책에 효과를 거둔다면 현재의 수많은 문서의 이동과 의사결정의 지체는 해결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중앙부처의 산하기관들이 중앙에 보내야 할 정보는 이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적어도 정책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타부처의 정보의 상당부분은 인트라넷에 의해 공유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강요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의 일방적인 정보요구나 지시에 대한 부분도 행정기관간 규제에 대해서도

③ 접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궤변적이다. 자동차,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이 곧 값싸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용하게 될 것이다.

④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이 있다. 실제로 원하는 사람들만이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Jon Katz, 1997: 66)

“규제기본법”의 내용을 적용시키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 3) 정보사회의 기반인 전자정보공개 수준의 미흡

정보공개와 공유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조성되지 않는 한 정부의 정보정책은 파행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연방정부공개법(Federal Freedom of Information Act)은 정부의 과정에 시민들이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도한 법이다. 새로운 정책을 형성하거나 기존 정책 자체를 재설정하는 결정은 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나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시민들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해야 한다.<sup>7)</sup>

중앙정부는 정보공유 및 공개제도를 통한 전자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개별 부처들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의 주관하에 1995년 2월부터 1996년 2월까지 초고속정보통신 구축과 관련하여 민간참여활성화, 행정·교육·의료·경제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법과 제도의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 각 해당 주관부처는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추진실적을 매분기마다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행정부문의 정비대상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정보화사회, 41).

1996년 12월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1997년 7월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중앙행정부처에 국장급의 CIO를 배치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등 법과 제도의 정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에 큰 밑그림이 되는 것까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법이나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욕구, 현실적인 실현방안 등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현실에 앞선 내용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나 대책은 별로 하지 않는 게 실정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도서관 및 정보과학 전국위원회, 정부문서 라운드 테이블, 미국도서관 협회, 정보산업협회 등에서 정부의 정보정책 원칙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으나, 연방정보자원의 관리 원칙인 회람 A-130<sup>8)</sup>을 제외하고는 어떤 단체들의 정

7) [www.freenet.scri.fsu.edu/fl-tap-info/theories.html](http://www.freenet.scri.fsu.edu/fl-tap-info/theories.html) 참조

8) 미국의 OMB의 “정보유포(dissemination of information)에 대한 차후 정책개발에 관한 두 번째 사전예고”에 의하면 (1) 정부정보는 공공자산이다. (2) 그러한 정보를 모든 시민들이 즉각 이용하게끔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3) 유포되는 정부정보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가공되어야 하며,---소프트웨어 개발은 종종 정부의 당연한 활동이다. (4)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행정기관은 민간부문이 생성되고 있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방해하기 보다는 장려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5) 정부는 정부정보에 형평하게

<표 2-1> 정부행정부문의 법·제도 정비 방안

대상 법·제도	정비 과제	주관(협조)부처
1) 행정규제 민원사무기본법 사무관리 규정 관보 규정 등	○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정보화 확대 - 내부결재, 문서수·발신의 온라인 처리기준 정립 - 민원행정의 온라인 Non-stop 처리제 도입 - 각종 인·허가, 신고 관련사항 공고, 신청 접수, 결과발표 등의 온라인체제 도입 - 입법 예고, 의견제출 등 각종 공시 및 의견 수렴행위의 민원 온라인처리제도 도입 등	주관(협조)부처 총무처
2) 정부보유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가칭)	○ 정부부처간, 정부-외부기관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정부보유 정보의 의무적 공개기준 정립 - 보유개인정보의 경우 공개여부, 범위 및 본인 의사확인 절차 추가 등	총무처 (각 부처)
3) 각 부처의 직제	○ 각 부처의 자율적 정보화 추진체제 강화 - 정보화담당관실 설치 등 정보화 추진 조직·예산·기능 확대	총무처 재경원 내무부
4) 정부조달관련법	○ 정보통신기기 조기고도화 - 내용연수 단축 - 부처의 수급계획 조정 권한 확대 ○ 정부 조달업무에 전자입찰제 도입	재정경제원
5) 행정전산망 추진에 관한 규칙	○ 정보통신기기 조기 고도화 - 각 부처의 관련 기기 자체구매 범위 확대	총무처 (정통부)
6)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정보통신전문인력 특별채용제 도입 ○ 정보통신을 이용한 재택근무제 도입 - 직장이탈에 대한 예외 인정	총무처 (정보통신부)
7) 공무원교육 훈련법	○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특별 교육	총무처
8) 신원조회 업무처리지침	○ 신원조회업무의 정보화 확대 - 신원조회 처리절차 개선	법무부 내무부

접근하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6)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정보흐름의 정도는 민간 부문의 참여에 의해서 제고되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보완적이어야지 정부의 의무를 대체해서는 안된다. (7) 연방정보보관 도서관(Federal depository libraries) 과 NTIS를 고려해보면, OMB는 이들이 정보정보유포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을 수용하고 있다(Peter Herson,397).

보정책원칙들이 정책원칙, 고려 및 전제로서 전혀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즉 정보공개 원칙들이 행정공무원들의 행동의 지침이 되도록 법률이나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eter Herson, 397).

1997년 9월에 총무처가 마련한 “인터넷 정부 홈페이지구축 체계화 방안”의 목적은 (1)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 서비스 및 국민과의 대화 통로 구축, (2) 인터넷을 통한 정부 대내,외 홍보 및 세계 각국 정보의 적극적 활용, (3) 정부고속망 및 초고속국가망 활용을 통한 정부홈페이지 및 인터넷 이용활성화 도모로 되어 있다.

이미 인터넷은 (1)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행정서비스를 행하는 전자정부의 핵심적 요소로서, (2) 행정공무원과 시민의 적극적인 대화 창구로서 나아가 정책과정의 참여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전자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서, 그리고 (3)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공동의 가상토론장으로서 전자공동체의 형성에 큰 역할을 행해 나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총무처의 방안은 인터넷에 대한 중앙정부의 낙후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감안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체계화방안 수립,추진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를 내무부의 산하단체로 여기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종종 보여지는 것이지만, 정책방안의 목적, 실천방법, 예산지원, 효과 등을 살펴보면 우리의 경우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거나, 과시적인 면이 엿보인다.

그리고 기존의 정보공개방법에 대한 것과 전자문서의 활용 등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부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모든 것에 접근하고 있다. 적어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의 경험이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몇 개의 모델화가 가능하다면 어느 모델이 더욱 효과적인가를 검토한 후에 적절한 표준화 모델을 모색해보는 경험-이론화-새로운 발전된 모델 구축으로의 행정패턴의 변화가 없는 한 한국정보화의 방향은 새로운 시도의 태동-(이러한 시동이 관심을 끌만 하거나 부처 이익의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면)갑작스러운 집중화-관련부분의 관심과 능력제고 하락-새로운 반발과 시도-또 갑작스러운 집중화를 반복하는 한국정부의 정보화 운동패턴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정보화를 추진할수록 방향을 잃어버리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 4) 중앙행정기관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공유방법의 미비

(1) 1976년-1982년의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2) 5년단위의 행정전산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제2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3) 추진 중에 있던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부처별 분산추진됨에 따라 국가자원의 낭비와 정보공유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이를 폐기하고 1983년에 수립된 국가기간전산망 계획(안)과 1987년에 확정된 행정 전산망을 위한 기본계획 그리고 (4) 1995-20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모두가 기존 계획을 평가하면서 정보화가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됨을 비판하고 만들어졌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기간전산망 추진을 위해 국가차원의 조정기구인 전산망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었음에도 평가는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에 한국전산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두 개의 보고서 모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정국환,1996.12/문신용,1997.4). 첫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표준의 문제, 정보공동활용 기반의 문제, 데이터베이스의 문제 둘째,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추진체계의 문제, 계획의 일관성 및 연계성의 문제, 부처별·업무별 독자적인 망 구성의 문제, 인센티브 부재의 문제 그리고 셋째, 정보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정보의 권력적 속성에서 발생하는 문제, 경쟁적·선점적인 부처별 중복 개발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통신개발연구원이 지난 6월 정보화추진 기본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델파이조사를 행했는데 행정업무의 정보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은 흔히 분산추진이라고 평가하는 부서별 할거주의와 정보화 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의 행태이다.<sup>9)</sup>

적어도 우리의 경우 20여년의 전산화, 정보화과정을 겪어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정보화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는 주-지방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일관된 서비스제공 환경 속에서 주와 지방행정기관을 함께 연결시키는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행정기관들을 상호조정하도록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구조의 다양성, 예산문제, 계층제의 정도, 사업중심-과정중심-고객중심의 업무환경의 차이 등 행정기관간, 주-지방간의 상당한 복잡성을 고려하고 있다. 주-지방정보시스템은 이러한 복잡성을 전제로 하고 모든 참여자들의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유된 목표,공유된 기술

9) 1997년 6월에 조사과정에 있는 자료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해석에 대해서는 통신개발연구원과 차이가 있을 것임.

① 2005년 행정업무 정보화구축에 가장 중요한 것(순서)?

행정업무처리방법 및 절차의 변화-법/제도정비-각 부처 이해관계 조정-공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행정정보의 디지털화-기타

② 정부부처의 리엔지니어링의 효과적인 집행이나 정보이용 활성화의 저해요인?

부서 이기주의에 의한 부서간 정보공유가 활발치 못함-업무처리권한 위임의 부적절성-적절한 유인의 부재-물리적 정보의 부족-통신망의 불비

적, 물리적 기반, 그리고 공유된 재정적, 인적 자원을 포함한 통합된 틀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haron S. Dawes, et al., June 1997,

<http://www.ctg.albany.edu/resources/rptwplst.html>)<sup>10)</sup>

#### 5) 범국민적인 정보정책협력 관계망 구축 미비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블록을 형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전문가들의 사안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정보통신기술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를 일찍부터 주도했으며, 1993년에 이미 연방조달업무를 전자상거래로 하자는 정부 안이 나왔고 올해부터 이를 의무화했다.

10) (미국뉴욕주의 예:실제 미국의 한 주는 한 국가와 동일하므로 이들의 문화와는 다르더라도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들의 노력이나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워야 한다)

뉴욕주 지사의 정보자원관리 타스크포스에 의해서 개발되고,공표된 다음의 뉴욕주 정책들은 주와 지방의 상호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에 적절한 것이다. 이들 정책의 전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http://www.irm.state.ny.us/policy/pol\\_tbl.htm](http://www.irm.state.ny.us/policy/pol_tbl.htm)

Number	Policy	Date Issued
96-7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pril 12, 1996
96-8	Use of the Internet	May 3, 1996
96-10	Legal Acceptance of Electronically Stored Documents	July 23, 1996
96-11	Network Services Agenda	August 7, 1996
96-11A	Agency Preparation for the "NYT"	November 15, 1996
96-14	New York State Use of Electronic Mail	June 11, 1996
96-16	Technology Standards	July 19, 1996
96-16A	Technology Standards -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s	January 3, 1997
96-17	New York State Strategy for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August 7, 1996
96-18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September 20, 1996
96-19	Data Sharing Among Agencies	December 5, 1996
97-1	Information Security Policy	January 9, 1997
97-2	Local Government/State Government Technology Initiatives	February 4, 1997
97-3	Statewide Data Dictionary	February 13, 1997

1997년 7월에는 클린턴대통령이 직접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추진안'을 발표하며 (1) 전자상거래 무관세 (2) 새로운 내국세 신설금지 (3)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을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처음으로 아세안과 한·중·일회담이 성사된 것은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아시아국가들간 협의의 장(場)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의 공식의제는 (1) 아시아국가간 무역 투자 중소기업협력 (2) APEC, 세계무역기구 (WTO), 아시아·유럽경제회의 (ASEM)에서 아시아국가간 협력방안 (3) 전자상거래 및 동남아 외환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교환이다. 특히 정부가 아시아권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논의를 주도하려는 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초기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표 4-1)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추진기관

분야별 대책	주요 내용	주관기관
I. 종합대책 수립 및 분야별 조정	-특별대책회의와 정책협의회 운영 -사무국과 분야별 전문작업팀 운영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수립	통산부
II. 대외협력 총괄	-WTO, OECD 등의 국제적 논의에 대응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협의	통산부
관세 및 내국세	-무관세화 및 내국세 신설금지 검토 -장·단기 영향 분석 및 우리입장 마련	재경원
지적재산권 보호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지적재산권 제도정비 및 WIPO논의에 대응	특허청
보안 및 사생활 보호	-OECD암호화 지침 및 국제논의 대응 -기술개발 지원 및 표준화	정통부
III. 국내기반 구축 총괄	-인터넷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지원사업, 요소기술 개발등	통산부
전자상거래 기본법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및 관련법령 정비	통산부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	-전자상거래 도입 지원	통산부
요소기술 및 표준 개발	-EDI, CALS/EC기술, 표준	통산부
	-전자화폐 기술, 표준	재경원
	-암호화, 전자지불 등	정통부
수요기반 확충	-조달EDI, 국방 CALS, 건설CALS등	추진부처
공급기반 확충	-정보산업육성 및 정보화인프라 구축	정통부
IV.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산업 육성	-인터넷 전자상거래 확대에 대비한 관련 산업 육성 대책 마련	통산부
멀티미디어컨텐츠 산업	-디지털 기술을 종합한 미래산업으로서 컨텐츠산업 육성	문체부
CALS/EC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기업에 CALS/EC 도입촉진 및 실현 지원	통산부
인터넷을 통한 수출촉진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촉진방안 마련 및 지원	통산부

출처 : 매일경제(1997. 10. 14, 3면)

이러한 능동적인 국제적인 대응과 아울러 국내에서도 인력풀체를 만들고 가동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산원이 인터넷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실무작업반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분야는 어느 한 행정기관의 소관이 아니라 (표 4-1)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다. 실물경제에 밝은 전자상거래분야 전문가를 발굴하지 못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산원의 김은 산업정보화지원팀장의 『각 업계의 전문가들이 실무작업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은 외국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 심각히 고려해 볼 문제인 것이다.

미국은 「인터넷라운드」를 제안하기에 앞서 1996년 말 「NII에서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틀」이라는 아홉번째 초안을 내놓는 등 몇년 전부터 인터넷상거래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해왔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자신문, 1997. 10. 15, 5면).

#### 7) 정보화를 통한 도시의 재구조화에 대한 관심의 결여

한국의 지역정보화정책은 도시와 농어촌의 구별이 없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1960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인해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의 광역시가 국가경쟁력의 중추로서 역할을 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화의 성과는 도시의 정보화를 통한 재구조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정보화전략에는 정보산업의 경쟁력은 중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도시정보화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 같다.

다음과 같은 뉴욕시의 사례는 도시 여건에 적합한 정보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 (1)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인지:

1970년대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기자에 대한 선호, 1980년대의 경영학에 대한 선호에서 1990년대의 정보문화산업에 대한 특히 인문계열의 출신들의 대거 참여로의 방향전환은 뉴욕주의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 정보컨텐츠산업의 가능성을 지역재활성화 정책과 절묘하게 결합시킬 수 있음을 인지(뉴욕타임즈 1995년 8월 기사 참고).

##### (2) 뉴욕주의 적극적인 대응

1967년에 세워졌으며, 1990년 이후 황폐화된 30층짜리 빌딩에 뉴욕정보기술센터가 설립되었으며, 뉴욕 주지사 Pataki는 1995년 9월 29일에 일련의 재산세 및 임대

세 감면, 에너지 사용료 환불 및 기타 재정적인 유인책을 마련한 법에 서명을 했으며, 특히 법안에 대한 전자결재는 인터넷 상에 방송되었다. 당시 뉴욕뉴미디어 협회(NYNMA)는 회원이 1700명이었으며, 기업은 대략 1,200에서 1,400개 였다. 뉴욕은 어떤 형태로든 1만명 이상으로 구성된 뉴미디어세계가 되었다.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의 연령을 보면 40대와 30대가 주류를 이루며, 20대도 상당 수 속하고 있다.(New York(November 13, 1995)잡지의 특집: It's 1995, and suddenly New York is Cyber City)

### (3) 효과적인 지역정보정책의 결과

지난 7월 줄리아나 시장은 한 연설에서 '뉴욕이 인구 1백만명 이상의 미국대도시 중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렇게 달라진 뉴욕의 풍경은 전례없는 호황에서 비롯된다. 이 도시의 저명한 산업분석가들은 호황의 원인을 디지털기술의 세례를 받은 첨단산업의 부흥에서 찾고 있다.

실리콘 벨리가 기술 중심이라면 뉴욕의 실리콘 앨리는 지식 중심의 디지털 전진 기지로 발전하기엔 최적의 입지, 뉴욕시 당국의 치밀하고 적극적인 지원(시당국은 공동화되어가고 있는 맨해튼의 부흥을 위해 다운타운 건물에 입주한 뉴미디어 벤처 기업들에게 5년간 재산세의 50%까지 감면--평당 400달러 정도의 싼 임대료로 건물을 마음대로 사용)

맨해튼 뒷골목에 첨단 벤처기업 속속 입주하여, 인터넷 등 뉴미디어 콘텐츠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웹디자인, 온라인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벤처 기업들이 뉴욕을 실리콘 앨리(Silicon Alley)로 만들고 있음(조선일보,1997년 9월 20일 35면)

이러한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난 여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들의 컨소시엄형태의 테크노파크 계획을 수립하고 통상산업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연간 10억정도의 5년간 지원을 위한 선정작업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벤처기업지원 특별법"을 구체화시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조금 생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재구조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할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시재구조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관리를 위한 정보화도 (표 4-2)와 같이 건설교통부가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GIS사업이 지방의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활용계획 및 지방공무원 교육이 연계되어 나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재구조화 작업은 거의 이루어 질 수 없

을 것이다.

(표 4-2) 연도별 NGIS 활용시스템 구축 내용과 재원

구 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계
토지관리정보시스템 (건설교통부)	1,909	3,543	28,770	28,770	62,992
토양자원관리시스템 (농촌진흥청)	110	3,000	2,490	3,000	8,600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산림청)	3,607	4,113	1,247	1,375	10,342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건설교통부)	700	1,100	200	200	2,200
지질정보시스템 (한국자원연구소, 국토개발연구원)	400	600	600	600	2,200
계	6,726	12,356	33,307	33,945	86,334

자료:건교부(1997)

점차 도시공간과 정보공간이 유기적 결합하여 도시의 시간과 공간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Stephen Graham and Simon Marvin(1996:328)은 도시공간과 전자공간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① 정보통신사용이 도시에 집중되고, 정보통신,교통 및 각종 도시설네트워크 간 물리적으로 근접해지는 물리적 및 개발시너지 효과, ② 전자적 흐름에 의한 물리적 흐름, '가상적'인 전자 공간에 의한 물리적 공간의 상대적 혹은 절대적인 대체효과, ③ 정보통신이 물리적 이동과 개발을 촉진시킴, 도시로 물리적 집중은 정보통신 사용을 증대시키는 발생효과, ④ 텔레마틱스의 사용은 물리적 네트워크에 대한 매력, 효율성,능력을 증대시키는 고양효과를 낳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5. 결 론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의 사회화와 사회의 정보기술화가 상호진화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보화방향과 이를 위한 정보통신시책은 정보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화에 대한 역할분담도 거의 없는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장기계획들은 표현만

지역정보화이지 내용은 국가정보화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정보화기본촉진법의 내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거나 아니면 법의 주요을 담당할 주무부서나 조직신설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국가정보기반(NII)의 발전을 위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조를 위한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한 한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방정부의 역할:정보통신정책(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접근, 대역관리와 규제정책, 기존망의 능동적 흡수), (2) 정보정책(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정책, 지적 소유권, 정보유포, 프라이버시), (3) NII의 응용(경제성장, 효율적인 정부, 기초과학·수학·공학에서의 세계적 우위)에 있어서 (1)과(2)은 주로 연방정부의 책임이고 (3)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책임이다.

특히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정보를 전달하는 기반향상, 정보 접근향상, 전자우편을 통한 행정기관간 협조강화, 조달행정체계의 개선 등을 꼽고 있으며, 1994년에 52개주(Washington D.C.를 포함)에서 주정부의 전자우편사용에 관한 조사에서 33개주가 주전체 혹은 행정기관간 전자우편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었다(NASIRE,1994).

이러한 사례는 이미 선진국들은 정보기술의 행정활용에 대한, 사회적 활용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경험을 꾸준히 해 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75년 고박정희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정보정책에 대한 관심(행정전산화기본계획)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의 초고속정보기반구축계획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의 역사를 거치지만 정치적 이유와 부처간의 할거주의로 인해 앞서의 계획들이 부정되고, 새로운 그러나 환상적인 계획으로 대체되어 왔으며, 이 역시 똑같은 이유로 부정되는 정보정책의 악순환 법칙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1997년의 대선후보들은 나름대로의 정보정책에 대한 비전을 공개적으로 밝힐 기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전자신문, 4개PC통신사와의 전자토론회 등)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위시해 정보정책 관련부처의 통폐합 혹은 전면 개편 등 근본적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한국정보정책의 악순환법칙에 의하면 보다 환상적인 그러나 실현가능성은 더욱 멀어지는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의 신경망을 형성하는 정보기반의 속성에 대한 이해와 적응의 부재, 정보화의 경험부족과 적응에 대한 관념적 거부, 행정의 권력성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정보화방향에 대한 거부감, 정보화에 대한 일선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정책의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위임에 대한 인식(특히 정보인력양성,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 소규모 정보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회적 불이익계층에 대한 정보화지원 등 지역에 적합한 탄력적인

정책집행은 지방자치에게 맡겨야 한다)부재 등은 한국의 정보화가 제대로 자리잡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원한든 아니든, 혹은 의욕을 가지든 아니든 정보화의 추세는 막을 수 없는 것이며, 네트워크사회가 갖는 기본적인 이념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확산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처이기주의의 논리로 정보정책을 대하거나 정치슬로건으로 악용할 경우에 행정과 사회의 발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 한국의 정보화는 기형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형화는 세계화되어가는, 개방된 표준화 속에서 지적, 시용적경쟁이 더욱 격렬해지는, 정보기술의 인간화와 인간사회의 정보기술화라는 상호진화적 발전 속에서 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